

3. 도시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403호 1999. 6. 16.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중 나대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주택이 있던 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신축·개축 등을 허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시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중인자는 지정고시일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 사업내용의 조정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월 이내로 제한된 신고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중 나대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서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21조제1항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를 “관할 사장·군수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1월이내에”를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